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40조(보수) ①~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7. (생략) 8. F클래스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6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6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 9. (생략)	제40조(보수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7. (현행과 같음) 8. F클래스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6.0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5</u>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 9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/u>